

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권 회수가 사실상 어렵고,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들이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- 또한 민간위탁의 기간이 사업 분야와 계약방법에 따라 상이하여 그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최대 10년까지 지연될 수 있어,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권과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에 본 위원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기존 재위탁 기간인 7년을 6년으로 변경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. 또한 성과 보고서에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의회의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□ 항상 사랑하며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